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66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신종갑

1. 수정이유

차별적·부정적 명칭을 보편적인 용어로 순화하고 각 부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2. 수정 주요내용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약자와동행국)”을“(복지동행국)”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복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를 둔다.”로

같은 조 제2항 중“약자와동행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를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

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8호를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 관리”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안 부칙 제4조 제5호, 제13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40호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조 제20호, 제27호, 제34호, 제35호, 제39호 중 “관광경제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에 나목 및 다목 중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를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같은 조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로 수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약자와동행국)”을“(복지동행국)”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복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를 둔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를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8호를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안 부칙 제4조 제5호、제13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제32호、제33호、제36호、제37호、제38호、제40호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조 제20호、제27호、제34호、제35호、제39호 중 “관광경제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에 나목 및 다목 중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를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같은 조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u> <u>레는 「지방자치</u> <u>법」 제112조부터</u> <u>제 120조까지와</u> <u>「지방자치단체의</u> <u>행정기구와 정원</u> <u>기준 등에 관한 규</u> <u>정」 제5조부터 제</u> <u>8조까지 및 제13조</u> <u>에 따라 서울특별</u> <u>시 마포구에 두는</u> <u>행정기구와 소속</u> <u>행정기관의 설치</u> <u>등 조직과 분장사</u> <u>무의 대강을 규정</u> <u>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u>제1조(목적) 이 조</u> <u>레는 「지방자치법」 제125</u> <u>조부터 제134조까지와</u> <u>「지방자치단체의 행</u> <u>정기구와 정원기준 등</u> <u>에 관한 규정」 제13</u> <u>조에서 위임된 사항과</u> <u>그 시행에 필요한 사</u> <u>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국 및 담당관 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행정 관리국, 기획재정 국, 관광일자리 국, 복지교육국,</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행정 지원국, 약자와동행 국, 관광경제국, 재정 관리국----- -----.</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행정 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 국----- -----.</p>

도시환경국, 교통
건설국을 둔다.

② 부구청장 소속
으로 감사담당관과
마포1번가연구단
을 두고, 감사담당
관은 감사·조사·
민원소통·심사·
환경순찰 등을, 마
포1번가연구단은
소통·협치·구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
과·홍보과·청소
행정과·민원여권
과·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
의 분장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조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
담당관을 두고, 새마
포담당관은 구정 기획
·조정·심사분석·의
회협력·공약 사업 관
리·구민소통·법제심
사 및 송무 등을, 감사
담당관은 감사·조사
·민원관리·심사·환
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
원과·자치행정과·홍
보미디어과·구민안전
과·민원여권과-----
-.

② 행정지원국장-----

-.

1.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행정지원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개정안과 같음)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정보기획, 전산 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 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약자와동행국) ①

약자와동행국에 주민 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약자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육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5조(복지동행국) ①

복지동행국에 -----

-----아동청소년과

· 교육정책과-----.

② 복지동행국장-----

----- .

1. (개정안과 같음)

<u>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u>	2. (개정안과 같음)
2. <u>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u>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3. <u>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6. (개정안과 같음)
4. <u>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7. <u>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
5. <u>양성평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u>
6. <u>아동복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신 설>

제5조(기 획재정국)

① 기 획재정국에
기 획예산과 · 재무
과 · 징수과 · 세무
1과 · 세무2과 · 부
동산정보과를 둔
다.

② 기 획재정국장
의 분장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 · 조
정 · 심사분석,
예산 편성 · 배정
· 교부, 투자심
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
업, 법제심사 및
송무, 통계에 관
한 사항

2. ~ 4. (생 략)

제6조(관 광일자리
국) ① 관 광일자리
국에 관 광과 · 일

제7조(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디지 털
재정과 · 재무과 · 징수
과 · 재산세과 · 지방소
득세과 · 부동산정보과

--.

② 재정관리국장-----

-.

1. 예산 -----

----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
신, 정보보안, 영상
정보 운영 · 관리----

2. ~ 4. (현행과 같
음)

제6조(관 광경제국) ①
관 광경제국에 관 광정
책과 · 경제진흥과 · 문

제7조(재정관리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예산 -----

----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
신, 정보보안-----

2. ~ 4. (개정안과 같
음)

제6조(관 광경제국) ①
관 광경제국에 관 광정
책과 · 경제진흥과 · 문

자리지원과 · 문화예술포 · 지역경제과 · 생활체육과를 둔다.

② 관광일자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획, 관광사업,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 설치 ·

화누리과 · 일자리청년과 · 체육진흥과 · 교육정책과-----
-----.

② 관광경제국장-----

-----.

1.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
--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
3. (현행과 같음)
2. ----- 전통시장 · 상점가 · 소상공인 -----

5. ----- 생활체육시설 -----

화예술포 · 일자리청년과 · 체육진흥과-----
-----.

② -----

-----.

1.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운영·관리에 관
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생활
보장과·노인장애
인과·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교
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
의 분장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
획,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

6. 교육사업 추진, 교
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교육, 서울형 혁
신교육지구 운영, 청
소년 교육센터 운영,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
영 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법인 관리, 지역
복지욕구조사,
복지서비스 연
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
원, 지역보호체
계, 통합사례관
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
약계층 지원, 의
료급여, 자활지
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장애
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영유
아 보육사업, 출
산장려,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
한 사항

5. 아동복지, 청소
년 지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안전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제8조(도시환경국) ① -

-----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제8조(도시환경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1. (개정안과 같음)
- 2.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3. 건축행정, 건축 허가·착공·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안전정책 총괄
· 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옥외 광고물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도시디자인, 건축 안전-----

<삭 제>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5.·6. (개정안과 같음)
제9조(교통건설국)	제9조(교통건설국) ① -	제9조(교통건설국) ①
① 교통건설국에 <u>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u> 를 둔다.	----- <u>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u> ----- -----.	(개정안과 같음)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②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u>토지의 사용·수용, 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u>	3. ----- ----- ----- <u>도로의 사용·수용·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광고물관리</u> ----- ----	3. (개정안과 같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4.·5.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설치) ----- ----- - <u>제126조</u> -----	제10조(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113조와 「지역
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
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
소를 설치한다.

제12조(직제 및 업
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위생
과·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
11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규정
된 소관사무와 식
품 및 공중위생업
소 허가·지도감
독, 농·수·축산
물의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
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

-----.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 보건행정
과·위생과·건강동행
과·의약과-----.

② -----

----- 안전관리, 출산장
려-----.

제13조(설치) ① 법 제1
27조----- 도서관 --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
27조----- 도서관 및

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 17 조 (관 할 구 역)
법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동의 명칭
과 관할구역, 그리
고 법 제 4 조 의 2 제 4
항에 따른 행정동
의 관할구역은 이
를 따로 조례로 정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 17 조 (관 할 구 역) 법 제
7 조 제 1 항 -----

법 제 7 조 제 4 항 -----

-----.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조 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 2 조 (소 관 사 무 에 대 한
경과조치) 이 조 례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구분청·보
건소·사업소의 담당
관·국·과의 소관사

청소년교육센터-----

-----.

② (개정안과 같음)

제 17 조 (관 할 구 역) (개 정
안과 같음)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2022년 10
월 7일 -----.

제 2 조 (소 관 사 무 에 대 한
경과조치) (개 정 안 과
같음)

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분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장”으로, 제6조 중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성 및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
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
구 상징물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
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며, 제
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팀장”을 “행정지원
팀장”으로 하고, 별표2
의 “행정민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
다.

10. 「서울특별시 마
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자원재활용팀장”을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복지동행국장”-----.

14. (개정안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

관리국장”을 “도시환경
국장”으로, “청소행정과
장”을 “자원순환과장”으
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
지원과장”을 “디지털재
정과장, 교육정책과장”
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고, 별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가. 별표1의 자연재난분
야 1, 2의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하고, 3의
“도로과”를 “도로개선
과”로, 4, 5의 “도시환경
국”을 “행정지원국”으
로, 6의 “환경과”를 “맑
은환경과”로 하고, 별표
1의 사회재난분야 1의
“도로과”를 “도로개선
과”로, 2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7의
“환경과”를 “맑은환경

16.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안과 같음)

과”로, 9의 “행정관리국”을 “재정관리국”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10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1의 “행정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13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4의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나. 별표2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

나.-----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9조 중 “기

17. (개정안과 같음)

18. (개정안과 같음)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획예산과장”을 “디지털
재정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
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
육국장”을 “관광경제국
장”으로, 제7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
경제국장”으로, “아동청
년과장”을 “아동청소년
과장”으로, “교육지원과
장”을 “교육정책과장”으
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
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교
육국장”을 “약자와동행
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제1호 중 “복지교육국
장”을 “약자와동행국장”
으로, “교육지원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을 “교육
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
과장”으로 한다.

-----.

20. 「서울특별시 마
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복지동행국장

-----복지동
행국장-----

-----.

21. 「서울특별시 마
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
국장-----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 중 “교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
국장-----.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
장-----.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제4조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교
육국장”을 “약자와동행
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
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
육국장”을 “관광경제국
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팀장”을 “교육
정책팀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
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교
육국장”을 “관광경제국
장”으로, 제5조제8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
정책과장”으로, 제13조
제1항 중 “교육지원과
장”을 “교육정책과장”으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4. 「서울특별시 마
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5. 「서울특별시 마
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 동행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

-----.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
국장-----

--.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

동행국장”으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

장-----.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
국장-----

-----.

41. (개정안과 같음)

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팀장”을 “경제총괄
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
진흥과장”으로, 제7조제
4항 중 “지역경제과 지
역경제팀장”을 “경제진
흥과 경제총괄팀장”으
로, “지역경제과”를 “경
제진흥과”로 한다.

42. 「서울특별시 마
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일
자리국장”을 “관광경제
국장”으로 한다.

43. 「서울특별시 마
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일
자리국장”을 “관광경제
국장”으로 한다.

44. 「서울특별시 마
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42. (개정안과 같음)

43. (개정안과 같음)

44. (개정안과 같음)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일자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

45. (개정안과 같음)

46. (개정안과 같음)

47. (개정안과 같음)

국장”으로 하고, 제17조 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48. (개정안과 같음)

49. (개정안과 같음)

50. (개정안과 같음)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

51. (개정안과 같음)

52. (개정안과 같음)

53. (개정안과 같음)

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생활복

54. (개정안과 같음)

55. (개정안과 같음)

지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도시안전과”를 “구민안전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장애인동행과장·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 재난안전팀장”을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장”으

56. (개정안과 같음)

57. (개정안과 같음)

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여성정책팀장”을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문화예

58. (개정안과 같음)

59.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술과”를 “문화누리과”로 한다.

61.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
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7조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제4호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0. (개정안 제61호와
같음)

61. (개정안 제62호와
같음)

6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6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62. (개정안 제62호와 같음)

63. (개정안 제64호와 같음)

64. (개정안 제65호와 같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5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과장”을

65. (개정안 제66호와 같음)

66. (개정안 제67호와 같음)

67. (개정안 제68호와 같음)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6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관리팀장”을 “운수질서관리팀장”으로 한다.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식품행정팀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

68. (개정안 제69호와 같음)

69. (개정안 제70호와 같음)

70. (개정안 제71호와 같음)

장을 “가족행복지원과 장”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조경팀장”을 “가로정원팀장”으로 한다.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과”을 “체육진흥과”로 한다.

71. (개정안 제72호와 같음)

72. (개정안 제73호와 같음)